



◆ 2024년 예산에서 선별된 20대 핵심과제 중 [지역투자 활성화] 관련 주요 재정사업 소개

「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(‘23~’27년)」

-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 계획으로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,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5년 단위의 법정부 계획

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

- 「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(2023~2027)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 마련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
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

재정투입 규모

42.2조원

(100.0%)

국비

24.6조원

(58.3%)

지방비

15.0조원

(35.6%)

민간투자

2.6조원

(6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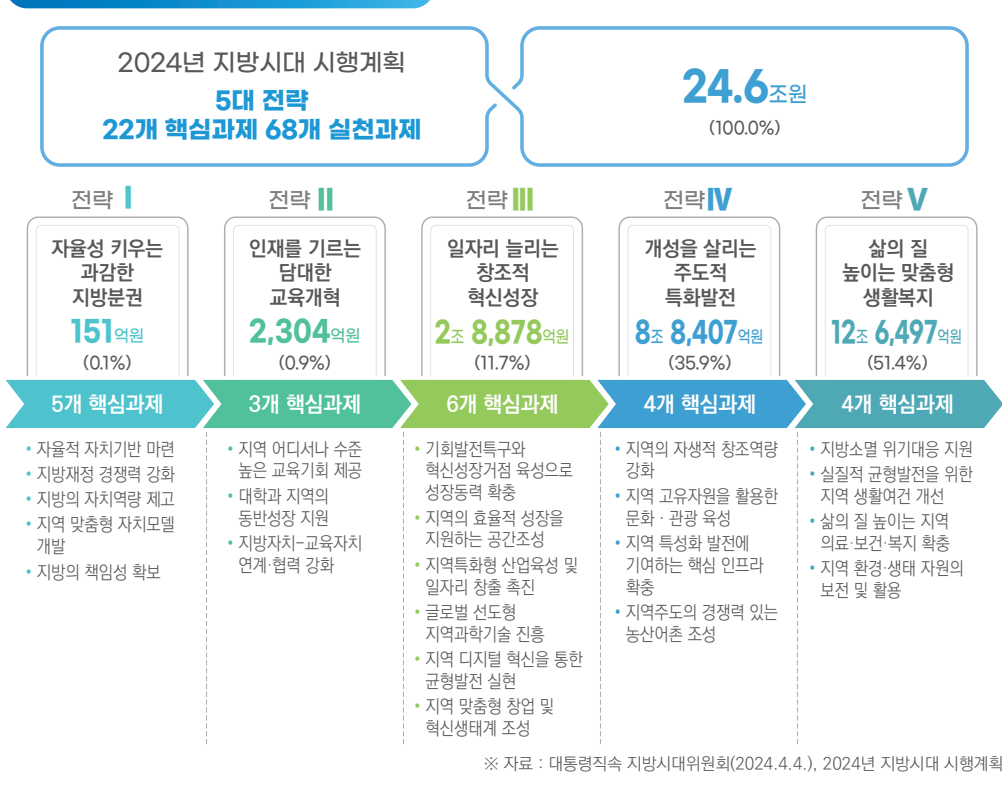
※ 자료 :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(2024.4.4.),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

2024년 달라지는 내용

	주요내용
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	• 정부가 총 3,000억(국가재정 1,000억 + 지방소멸기금 1,000억 + 산업은행 1,000억) 수준의 모펀드 조성 • 지자체와 민간 금융사가 자펀드를 결성하여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 추진
생활인구 확충사업 추진	• 생활인구(지역에 체류하는 인구) 확보 방식의 대책을 신규 추진 • 9개 시·도를 대상으로 총 135억원 규모의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를 지원 • 지역인재양성으로 지역·대학 동반성장, 혁신역량의 글로벌 대학 30개 육성
지역자율투자 강화	• 지자체가 스스로 편성 가능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사업 유형 확충 * 2023년 : 24개 → 2024년 : 37개
지역주도·상향식·성과중심 대학 혁신	• 2026년까지 역량이 우수한 비수도권 지방대 총 30개교 글로벌대학 선정 * 2023년 10개교 선정 → 2024년 10개교 신규 선정

※ 자료 :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

5대 전략별 재정투입 계획(중앙부처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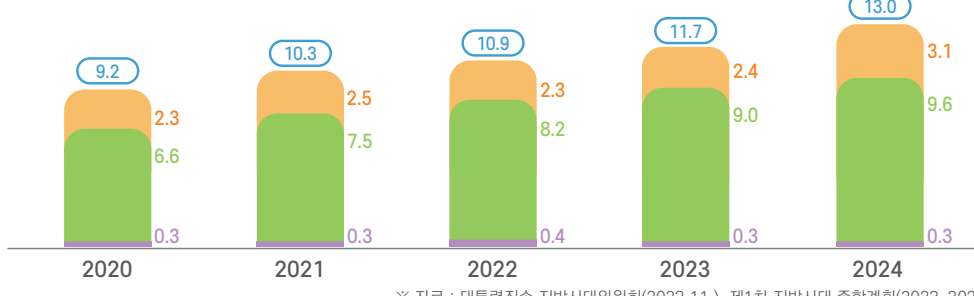
※ 자료 :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(2024.4.4.),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

연도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정투자

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

-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
- 예산안 편성시점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하여, 예산요구단계부터 지방 의견이 수렴되도록 제도와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 - 자율계정 :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거나, 현상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사업을 선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
 - 지원계정 : 권역간 협력 및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해 국가의 체계적인 수요·공급 관리, 기능 조정이 요구되는 사업

○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■ 지역자율계정 ■ 지역지원계정 ■ 제주·세종계정 단위 : 조원



※ 자료 :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(2023.11.),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(2023~2027)

지역투자 활성화 관련 주요 사업

문화도시 조성(지역지원)

문화체육관광부 /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

- 사업목적** | • (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지원) 개별 지자체 지원 탈피, 문화도시와 주변도시의 문화정책이 총망라되는 광역형·네트워크 도시발전모델로, 연계형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형 앵커사업 지원
- (문화도시 관리 및 홍보)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,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운영, 문화도시 홍보를 위한 서면·현장 평가 비용, 도시 간 교류·협력 지원 등 추진

- 사업근거** | • 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(문화도시에 대한 지원)
-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5조(문화도시에 대한 지원)

- 추진경위** | • 대한민국 문화도시
- 공모('23.6월~11월)
 -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발표 예정('23.12월)
 - 예비사업 추진(앵커사업 시범지원 포함)('24.1~12월)
 -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('24.12월)
 -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('24.12월)

[국정과제 56-4] 문화자치로 실현하는 지역문화 균형발전

-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·확산
- 「^{가칭}문화도시 2.0」 추진) 문화·관광·도시계획 등 초협력, 소외 중소도시 연계로 지역 동반성장, 국제교류·협력으로 세계화 견인

세부내용 | 사업내용

- 사업시행방법 : 지자체 보조, 민간위탁
- 사업시행주체 : 문체부, 문화도시 지자체, 지역문화진흥원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비율(%)	보조를 법적근거(해당 조항)
지자체 보조	50%	• 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(문화도시에 대한 지원) •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5조(문화도시에 대한 지원)

집행절차



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

국토교통부 /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

- 사업목적** | • 인구감소 지역내 존재하는 빈집, 폐시설,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거적 방문 유도 및 생활인구 유입 지원

- 사업근거** | •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 및 제31조
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제15조

- 추진경위** | • 국정과제(38)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, 국정과제(120) 지방소멸방진,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

세부내용 | 사업추진체계
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내역사업명	구분	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금액 (2024예산)	지원 비율 (%)	보조를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	보조	지자체 보조	13,500백만원	50	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(별표1 122호)

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

교육부 /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

- 사업목적** | • 대학과 지역사회의 벽을 허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추진 지원

- (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) 지자체-대학이 협력체계(지역혁신플랫폼)를 구축하고,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'지역인재 양성-취창업-정주'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지원
- (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, LINC 3.0) '대학 산학연협력'을 보편화한 1·2단계 LINC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산학연협력 역량 고도화를 위해 대학의 모든 산학연협력 요소* 종합 지원
 - * 인재양성, 인프라 구축, 기술이전·사업화, 취·창업, 공유·협업 체계 마련 등
- (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, LINC 3.0) '대학 산학연협력'을 보편화한 1·2단계 LINC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산학연협력 역량 고도화를 위해 전문대학의 모든 산학연협력 요소 종합 지원
- (전문대학 지역기반 협업체) 전문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특화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 소멸 및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내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재교육 및 향상교육 지원
- (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) 성인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, 대학의 자율적인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
- (지방대학 활성화 사업) 지방대학*이 지역과 연계한 강점 분야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혁신의 허브로 발전 지원
 - *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 대상
- (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지원) 전문대학 혁신지원 대학 중 지방 전문대학이 지역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

세부내용 | 사업추진체계

- 사업 수혜자 : 대학(전문대 포함) 등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내역사업명	구분	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금액 (2024예산)	지원 비율 (%)	보조를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	출연	한국연구재단	342,000백만원	100	-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, 제16조, 제21조 -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3조, 제12조, 제15조 - 학술진흥법 제5조,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 - 고등교육법 제7조 및 8조 등
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	출연	한국연구재단	302,500백만원	100	-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- 학술진흥법 제5조,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
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육성	출연	한국연구재단	104,500백만원	100	-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- 학술진흥법 제5조,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
전문대학 지역기반 협업체	출연	한국연구재단	90,000백만원	100	- 고등교육법 제7조 및 8조 - 학술진흥법 제5조,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 -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3조, 제12조, 제15조
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	출연	국가평생교육진흥원	51,000백만원	100	- 고등교육법 제7조 -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29조
지방대학 활성화 사업	출연	한국연구재단	237,500백만원	100	- 고등교육법 제7조 및 8조 - 학술진흥법 제5조,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 -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3조, 제12조, 제15조
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지원	출연	한국연구재단	75,000백만원	100	- 고등교육법 제7조 - 학술진흥법 제5조 -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3조, 제12조, 제15조 -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